

제350회 임시회  
2016. 8. 30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종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8월 19일
- 회부일자 : 2016년 8월 22일

3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 (안 제8조)
  - “3년 이내로 한다.” ⇒ 5년으로 한다.
- 위탁 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개정(2016. 9.23)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인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 과 ‘가정위탁지원센터’ 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고,
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 제2항의 개정(2016. 8.3)에 따

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기존 ‘5년 이내로 한다’ 에서 ‘5년으로 한다’ 로 변경됨에 따라,

- 현행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위탁기간을 ‘3년 이내’에서 ‘5년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  - 또한, 위탁 사무와 관련해 협약체결 관련 규정 등 제 규정이 다소 미비한 바,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 제8조제3항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위탁기간의 연장이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